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 안내

1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의의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,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
- 제33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)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 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 자를 가르칠 수 있다.
 -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, 등급, 자격기준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- 제28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)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・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다.
 -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"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2]

구 분	자 격 기 준
1 급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
'	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
	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
2급	2.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
	3. 전문대학·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
	1.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
3 급	2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
	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
	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
	3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
	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 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- 4. 기술・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 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
- 5. 기술·기능 분야의 산업기사·기능사 자격증,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 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는 자격 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
- 6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을 받은 사람
- 7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

비고: 교육훈련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

가. 분야 : 사업 관리 등 24개 분야

나. 직종 : 1-1.사업관리 등 154개 직종(세부내용 붙임1 참조)

- 3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요건(시행령 별표2의 자격기준)
 - ⇒ 자격증(학위) +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+ 교직훈련과정 이수
 - 가. 자격증, 학사 이상의 학위,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
 - 자격증: 「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0 호)」의 [별표2]에서 정한 "국가기술자격" 및 "국가전문자격"

〈[별표2]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〉(발췌)

분야 (24)	교사의 자격직종 (154)	요구자격증								
		국가기술자격						국가전문자격	중등학교	- 경력인정구분
		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	서비스	<u> </u>	정교사	
01.사업 관리	1-1.사업관리							경영지도사(재무관리), 공인회계사		공적개발원 조사업관리, 프로젝트관리, 산학협력관리, 해외법인설립관리, 해외취업관리

- 학위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만을 인정(전공 고려)
- 중등학교 정교사 1~2급: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1조 및 [별표2]에 따라

교육부 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나.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: 「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0호)」의 [별표3] (전체 내용은 붙임2 참조)

〈[별표3]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〉(발췌)

1. 교육훈련경력

- 1)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(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을 포함한다)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.
- 2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,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

2. 실무경력

- 1) 응용, 제작, 제조, 조작, 보수, 정비, 채취, 검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
- 2) 사무ㆍ서비스직 업무
- 3)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업무
- 4) 직업훈련에 관한 기준이나 교재 작성 업무
- 경력연수 산정 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(시행령 [별표2]의 3급 란 중 2~7호 등 관련)"은 「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0호)」에 고시된 [별표2의2] 직무기술서의 주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
 - * 전체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0호 [별표2의2] 참조
- 다. 교직훈련과정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) 이수
 - 훈련기관 :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
 - 교육대상 : 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2급 2호, 3급 2,4,5,6호에 해당하는 자
 - 선발기준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80% + 기타 직종 20%)

구 분	선 발 기 준	모집정원
1순위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장애등급이 높은 자 2. 신청직종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후 해당직종의 실무 및 교육 훈련경력이 많은 자	교육예정 인원의 20%
2순위	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또는 기능장 소지자 1.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자에서 자격증 합격일이 빠른 자 2.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합격일이 빠른 자	교육예정 인원의 30%
3순위	1 · 2순위 선발자를 제외한 인원 중 직업훈련기관 재직자 1. 신청직종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후 해당 직종의 실무 및 교 육훈련경력이 많은 자	교육예정 인원의 40%
4순위	1 · 2 · 3순위 선발자를 제외한 전원 1. 신청직종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후 해당 직종의 실무 및 교 육훈련경력이 많은 자	상위순위 선발 후 잔여 인원

- 신청방법

① HRD-Net 홈페이지 접속 (http://www.hrd.go.kr)

⑧ 최종 신청

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[신청] 클릭 (최종 신청 후 신청내역에서 신청현황 확인 가능)

② 로그인

1

HRD-Net 가입 후 로그인

⑦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

신청 화면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(항목별 파일 미업로드 시 미인정)

③ My서비스 접속

HRD-Net 우측 상단의 **[MY서비스]** 항목 클릭

⑥ 연수 과정 선택

접수 기간에 신청하려는 차수를 선택하여 [접수] 클릭

④ <u>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접속</u> 좌측 메뉴 중 [훈련교사] 항목 클릭

⑤ 해당 연수 접속

교직훈련과정(자격증 최초 취득) 또는 향상훈련과정(기존 취득 자격증 승급) 클릭

- 훈련기간 : 150시간(온라인 50시간/6주 + 오프라인 100시간/평일3주, 주말7주)
- 훈련내용(교직훈련과정)

과 정	교 과 편 성						
	영 역	교과내용	기간				
교직훈련 과정	[훈련기간]		[4주 이상, 140시간 이상]				
	1. 교양	· 훈련교사 직업관	20% 이내				
		· 훈련교사 관계법령					
	2. 교 직	· 훈련요구조사 및 과정개발 · 훈련교사 수업운영 · 근로자생애 경력경로 설계 및 취업지도	80% 이상				
		·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훈련과정 편성					

- ※ 교직훈련과정이 면제되는 경우
- 가. 기능대학(폴리텍)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
- 나. 교원자격검정령 상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(준교사, 실기교사는 교직훈련과정 면제 대상이 아님)
- 라.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절차



※ 필요서류: 경력정보(경력증명서), 자격정보(해당직종 관련 자격증), 자격연수 증빙서류 (교직훈련과정 수료증,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), 기타 증빙서류(학사취득 서류 등)

교사의 자격직종

(154직종)

분야	교사의 자격직종
01.사업 관리	1-1.사업관리
02.경영·회계·사무	2-1.경영기획, 2-2.홍보·광고, 2-3.마케팅, 2-4.총무·일반사무, 2-5.인사·조직, 2-6.재무, 2-7.회계, 2-8.생산관리, 2-9.품질관리, 2-10.무역·유통관리
03.금융·보험	3-1.금융영업, 3-2.신용분석, 3-3.자산운용, 3-4.증권·외환, 3-5.보험상품개발, 3-6.보험영업·계약, 3-7.보험손해사정
04.교육·자연·사회 과학	4-1.평생직업교육
05.법률·경찰·소방· 교도·국방	5-1.법률, 5-2.소방, 5-3.방재
06.보건·의료	6-1.의료기술지원, 6-2.보건지원, 6-3.간호, 6-4.임상지원
07.사회 복지·종교	7-1.사회복지, 7-2.직업상담서비스, 7-3.청소년지도, 7-4.보육
08.문화·예술·디 자인·방송	8-1.문화예술, 8-2.문화재관리, 8-3.디자인, 8-4.문화콘텐츠, 8-5.영상제작
09.운전·운송	9-1.자동차운전·운송, 9-2.철도운전·운송, 9-3.선박운전·운송, 9-4.항공운전·운송
10.영업 판매	10-1.일반·해외영업, 10-2.부동산컨설팅, 10-3.부동산관리, 10-4.부동산중개, 10-5.부동산감정평가, 10-6.e-비즈니스, 10-7.일반판매
11.경비·청소	11-1.경비·경호, 11-2.청소, 11-3.세탁
12.이용·숙박·여행· 오락·스포츠	12-1.미용서비스, 12-2.이용서비스, 12-3.결혼서비스, 12-4.장례서비스, 12-5.여행서비스, 12-6.숙박서비스, 12-7.컨벤션, 12-8.관광레저서비스, 12-9.스포츠, 12-10.레크리에이션
13.음식 서비스	13-1.음식조리, 13-2.식음료서비스
14.건설	14-1.건설공사관리, 14-2.토목설계·감리, 14-3.토목시공, 14-4.측량·지리정보개발, 14-5.건축설계·감리, 14-6.건축시공, 14-7.건축설비설계·시공, 14-8.플랜트, 14-9.조경, 14-10.국토·도시계획, 14-11.교통계획·설계, 14-12.건설기계운전, 14-13.양중기계운전, 14-14.건설기계정비, 14-15.해양자원, 14-16.잠수
15.기계	15-1.기계설계, 15-2.기계가공, 15-3.특수가공, 15-4.기계조립·관리, 15-5.기계품질관리, 15-6.기계장비설치·정비, 15-7.냉동공조설비, 15-8.자동차설계·제작, 15-9.자동차정비, 15-10.자동차관리, 15-11.철도차량설계·제작, 15-12.철도차량유지보수, 15-13.조선, 15-14.선박정비, 15-15.항공기설계제작, 15-16.항공기정비관리, 15-17.사출금형, 15-18.프레스금형
16.재 료	16-1.금속엔지니어링, 16-2.금속재료제조, 16-3.금속가공, 16-4.표면처리, 16-5. 용접, 16-6.요업재료
17.화학	17-1.화학물질·화학공정관리, 17-2.석유·기초화학물제조, 17-3.정밀화학제품제조, 17-4.바이오화학제품제조, 17-5.플라스틱제품제조
18.섬유·의복	18-1.섬유제조, 18-2.패션, 18-3.신발개발·생산
19.전기·전자	19-1.발전·송·배전, 19-2.전기기기제작, 19-3.전기설비설계·감리, 19-4.전기공사, 19-5.전기자동제어, 19-6.전기철도, 19-7.철도신호제어, 19-8.전자기기일반, 19-9.전자기기개발, 19-10.전자부품개발, 19-11.반도체·디스플레이개발, 19-12. 로봇개발, 19-13.의료장비제조, 19-14.광기술개발, 19-15.3D프린터개발
20.정보·통신	20-1.정보기술전략·계획, 20-2.정보기술개발, 20-3.정보기술운영·관리, 20-4.유선통신구축, 20-5.무선통신구축, 20-6.통신서비스, 20-7.방송기술
21.식품가공	21-1.식품가공, 21-2.제과·제빵·떡제조
22.인쇄·목재·가구· 공예	22-1.출판, 22-2.인쇄, 22-3.공예, 22-4.귀금속·보석
23. 환경·에 너 지· 안전	23-1.수질관리, 23-2.대기관리, 23-3.폐기물관리, 23-4.소음진동관리, 23-5.토양관리, 23-6.환경보건관리, 23-7.생태복원·관리, 23-8.환경서비스, 23-9.광산, 23-10.신재생에너지생산, 23-11.산업안전관리, 23-12.산업보건관리, 23-13.비파괴검사
24.농림·어업	24-1.농업, 24-2.축산, 24-3.임업, 24-4.수산

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

1. 교육훈련경력

- 가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별표 2에서 "교육훈련경력"이란 다음의 경력을 말한다.
 - 1)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 런교사(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을 포함한다) 또는 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. 이 경우 "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"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)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
 - 나)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(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및「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대학 등)
 - 다)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, 허가, 승인,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(「학원의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치된 학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,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)
 - 2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,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
- 나.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람의 교육훈련경력은 주당 교육시간이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. 다만,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
2. 실무경력

- 가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별표 2에서 "실무경력"이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.
 - 1) 응용, 제작, 제조, 조작, 보수, 정비, 채취, 검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
 - 2) 사무ㆍ서비스직 업무
 - 3)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업무
 - 4) 직업훈련에 관한 기준이나 교재 작성 업무